

2026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 신규단원 모집 공고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예천군의 아동·청소년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배우고, 자존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선율을 함께 만들어 갈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아동 및 보호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21일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

나. 교육기간 : 2026. 3. ~ 12.(매주 월, 목요일 / 16:00 ~ 19:00)

다. 교육장소 : 예천군문화회관(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15)

라. 교 육 비 : 전액 무료(1인 1악기 무상대여)

마. 교육내용

- 클래식 음악에 기반을 둔 악기교육 및 합주 진행
- 교향곡 및 OST 등 다양한 곡으로 파트별 수업 진행
- 공연 관람, 여름캠프, 향상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 등

바.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 주 관 : 예천군 · (재)예천문화관광재단

2 모집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 21.(수) ~ 2. 8.(일)

나. 접수기간 : 2026. 1. 21.(수) ~ 2. 8.(일)

다. 신청자격 및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초등학생 3 ~ 6학년
- 악기에 관심이 많으며 타 아동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내 초등학생
- ※ 악기연주 경험이 없는 아동도 가능

라. 지원사항

- 교육지원 : 교육비 무료 및 취약계층 1인 1악기 무상대여
- 통학지원 : 통학 버스 및 택시 운영(원거리 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마. 모집인원 : 총 00명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선발(별첨자료 참고)

바. 모집파트 : 9개 파트

바이올린 (1, 2파트)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타악기
------------------	-----	----	-----	------	-----	-----	-----

사. 파트선정 : 음악감독 및 전문강사 등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배정

아. 추진일정

구 분	내용 및 일정	비 고
공고기간	2026. 1. 21.(수) ~ 2. 8.(일)	
접수기간	2026. 1. 21.(수) ~ 2. 8.(일)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2. 11.(수)	면접심사 통보
인터뷰 심사	2026. 2. 21.(토) ※ 심사 시 보호자 동반 참석	예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23.(월)	
오리엔테이션	2026. 3. 9.(월) 16:00	예정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3 선발 및 신청방법

가.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인터뷰 심사

- 인터뷰 심사 고득점자(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선발)

나. 선발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 교육 참여 의지가 확고하고 정기교육 및 기타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아동	
서류심사	○ 적격심사 여부 판단 - 취약계층, 예천군 주소지 등	
인터뷰 심사	○ 아동 면접, 보호자 면담 - 아동의 순수 참여 의지와 관심도 - 활동 및 연주 참여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의 이해도 및 적극성	보호자 동반 필수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방문 접수

- 전자우편 : soo@yctf.kr
 - 제출 서류 순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며, 양식과 구비서류는 동일 파일 하나로 스캔하여 제출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단원모집(이름)’ 으로 기재 / ex)단원모집(홍길동)
- 방문접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15 예천군문화회관 2층 (재)예천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

4 제출서류

-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서식 2] 지원신청서 1부
-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4] 보호자 동의서 1부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수제출
- [구비서류 2]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1부 ※ 별첨자료 참고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지원 서류상의 기재착오, 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중도에 교육 포기 단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 순서에 의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하여 선발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예천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 054-650-8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u>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table><tr><th>구분</th><th>1인가구</th><th>2인가구</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h>7인가구</th></tr><tr><td>기준중위소득(50%)</td><td>1,282,119</td><td>2,136,613</td><td>2,761,282</td><td>3,247,369</td><td>3,685,614</td><td>4,098,907</td><td>4,512,199</td></tr></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282,119	2,136,613	2,761,282	3,247,369	3,685,614	4,098,907	4,512,199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282,119	2,136,613	2,761,282	3,247,369	3,685,614	4,098,907	4,512,199										
조손 가정의 자녀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정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구분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학교장 추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 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자치단체장 추천자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6. 1. 기준/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table border="1"> <tbody> <tr> <td>부산(3)</td><td>동구 서구 영도구</td></tr> <tr> <td>대구(3)</td><td>남구 서구 군위군</td></tr> <tr> <td>인천(2)</td><td>강화군 옹진군</td></tr> <tr> <td>경기(2)</td><td>가평군 연천군</td></tr> <tr> <td>강원(12)</td><td>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명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td></tr> <tr> <td>충북(6)</td><td>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td></tr> <tr> <td>충남(9)</td><td>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td></tr> <tr> <td>전북(10)</td><td>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td></tr> <tr> <td>전남(16)</td><td>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td></tr> <tr> <td>경북(15)</td><td>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명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td></tr> <tr> <td>경남(11)</td><td>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td></tr> </tbody> </table>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명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명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명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명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79점이거나 DSM-IV(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기준 71-84점(표준편차 -1과 -2사이)에 해당하며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업능력,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별첨 2] 취약계층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순번	구분	증빙서류
1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3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4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5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6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7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8	도서벽지 거주자	재학증명서
9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10	다자녀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1	보훈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2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13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4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15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16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7	학교 밖 청소년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의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중 택 1
18	(신설)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아동)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79점이거나 DSM-IV(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기준 71-84점(표준편차 -1과 -2사이)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단서 등)